

수출e-구매론 추가약정서

(구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본인(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수출e-구매론」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구매기업이 ____년 ____월 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이하 “원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의 「수출신용보증(공급망) 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수출물품(원·부자재, 완제품 및 용역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합니다)을 공급받는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물품 등의 공급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은행의 「수출e-구매론 결제제도(이하 “결제제도”라 합니다)」 이용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정체결의 기본사항 및 대위권)

구매기업은 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합니다.

1. 구매기업은 대출 실행일 이후에 물품 등의 수량, 품질, 가격, 사후관리 등 상거래 관계로 말미암은 분쟁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2. 구매기업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은행이 구매기업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은 공사에 이전됩니다.
3. 은행이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구매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한 경우, 구매기업은 대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공사는 그 신용보증의 목적 또는 은행 및 구매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은행이 신용보증부 대출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담보권 설정자와 체결한 담보권 설정계약서 상의 담보권 설정금액(한정근담보, 특정근담보 등 명칭 불문)에서 보증부 대출 이외의 피담보채권을 차감한 담보여유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권은 공사에 이전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고 물품 등의 공급대금 지급채무를 가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2.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3. “수출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구매확인서로 그 공급이 확인된 것을 말합니다.
4.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합니다)가 전자적으로 발급한 증서로서 물품 등의 공급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말하며, 물품 등의 공급 이후 발급여부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결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구매확인서는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KTNET”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구매확인서 정보를 말합니다.
5. “구매확인서 정보”라 함은 구매확인서에 기재된 정보 중 ‘구매확인서 번호’, ‘구매자의 상호·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HS부호’, ‘구매원료·기재의 용도명세’, ‘구매일 또는 공급일’, ‘구매확인서 발급일자 또는 확인일자’, ‘관련 세금계산서 번호’ 등을 말합니다.
6. “세금계산서”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7. “세금계산서 정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정보 중 ‘승인번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및 ‘품목’을 말합니다.
8. “매출채권”(이하 “채권”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서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

9. “**매출채권 발행 신청**”이라 함은 구매기업명, 구매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판매기업명, 판매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채권금액, 결제일, 구매확인서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결제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채권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대출금의 상환일 또는 채권의 변제일을 말하며, **구매확인서 상의 구매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확인서 상의 구매일 또는 공급일이 복수 이상의 일자인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선입금**”이라 함은 채권의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 신청하는 행위로서, **구매기업의 개별대출을 실행하여 판매기업에게 지급(판매기업의 약정계좌 입금을 포함합니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외화통화로 발행된 채권은 결제일 전까지 선입금 할 수 없으며, 채권의 결제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지급합니다.**
12. “**전자적 장치**”라 함은 기업인터넷뱅킹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제4조(결제제도 이용약정의 체결, 정보집중 및 정보제공의 동의)

1. 구매기업은 결제제도 이용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은행은 결제제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매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채권 내역, 대출실행 및 상환 내역 등 결제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공사 및 KNET에 집중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로 합니다.
3. 구매기업은 이 약정의 체결에 의하여 제2항에 포함된 결제제도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4.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에게 발행하는 채권이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된 물품 등의 공급대금 지급을 위한 대금결제 용도임을 채권 발행 신청 정보와 대조하고, 구매확인서 금액 범위 내의 채권 발행 여부 등 구매확인서 한도관리 및 결제제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 정보를 KNET이 은행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결제제도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①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 : 제3조(용어의 정의) 5. “구매확인서 정보”에서 언급한 구매확인서에 기재된 항목
 - ② 보유기간 : 은행은 제①호의 정보를 구매기업에게 결제제도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거래내용의 확인)

1. 은행은 결제제도와 관련한 거래의 처리결과를 구매기업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기업이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전자적 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형태로 구매기업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3. 구매기업은 요청한 거래내용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6조(업무의 제한)

다음 각 항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제도 관련 업무가 제한됩니다.

1.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구매기업이 은행과 체결한 원 약정서 “제 6조(감액·정지)” 조항에 의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3. 공사의 「수출신용보증(공급망) 약관」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공사가 은행에게 구매기업을 신용보증 제한 대상으로 통지한 경우
5. 판매기업 등 제3자가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등 공사의 「수출신용보증(공급망) 약관」에서 정한 대출의 실행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구매기업이 은행에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거나 불건전여신이 있는 경우 및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7. 구매기업이 결제제도와 관련한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타 여신을 연체한 경우
8. 구매기업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구매기업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하거나 등록된 경우



10.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기업에 대한 희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희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11. 구매기업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
12. 공사가 은행에게 구매기업을 신용보증사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경우
13.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 물품 등의 공급대금의 지급이 아닌 채권을 발행하는 등 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14.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7조(결제계좌의 지정)

1. 구매기업이 이 약정에 따라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은행에게 통보한 채권에 대하여는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의 법률 관계와 무관하게, 구매기업이 채권의 변제무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채권의 결제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한 구매기업 명의의 결제계좌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명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원화)
		(외화)

2.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대출금 상환 및 공급대금 지급으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 취급 및 이자 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8조(채권의 발행 및 취소)

채권의 발행 및 취소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

1. 구매기업은 물품 등의 공급대금의 결제일이 구매확인서 상의 구매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써 구매확인서로 그 공급이 확인된 물품 등의 공급대금의 결제 용도로만 채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구매확인서 상의 구매일 또는 공급일이 복수 이상의 일자 인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의 기간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2. 구매기업은 구매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구매확인서를 기준으로 다수의 채권을 발행하는 (이미 발행한 채권을 포함합니다)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3. 구매기업은 채권 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는 구매확인서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구매확인서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범위 내에서 다수의 채권을 발행하는(이미 발행한 채권을 포함합니다)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4.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납품대금의 지급일 경우 채권의 결제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구매기업은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5.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경우 채권의 결제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경우 구매기업은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합니다.
6. 채권의 결제일이 은행영업일(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제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로 자동 이연하여 처리합니다.
7.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8. 구매기업은 채권의 결제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판매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의 하자, 전산조작 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채권발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기업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선입금 한 경우, 구매기업은 채권발행을 취소할 수 없으며, 결제일에 채권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9.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과 같이 물품 등의 공급대금의 지급이 아닌 채권의 발행인 경우, 은행은 해당 채권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9조(대출의 실행, 대출이자 및 보증료의 납부)

1. 구매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구매기업의 개별대출을 실행하여 판매기업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판매기업이 선입금할 수 있는 채권은 원화통화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2.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이 물품 등의 공급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선입금 시,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부가가치세법」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제출(또는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는 구매확인서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는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등 B2B상거래정보를 조회합니다.
3. 공사의 수출신용보증(공급망) 약관 또는 특약 등에 의해 정하는 판매기업 선입금 최고 잔액(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되어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을 말합니다)은 원 약정서에서 정한 여신(한도)금액의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선입금은 채권 발행 당일부터 채권의 결제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5. 선입금은 원 약정서에서 정한 여신(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 건 별로 횡수에 상관없이 최저 일만원 이상 분할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개별대출의 만기일은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또는 약정기한)을 초과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개별대출의 만기일이 여신기간 만료일(또는 약정기한)부터 6개월 이내 도래 시 취급이 가능합니다.
7. 대출이자선입금일에 원 약정서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8. 보증료는 공사와 구매기업이 약정한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9. 판매기업의 선입금에 따른 대출이자선입금은 판매기업이 부담하며, 대금 지급 시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10. 보증료는 판매기업이 부담하며, 대금 지급 시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제10조(대출의 상환, 채권대금의 지급 및 보증료의 환급)

1. 구매기업은 결제일의 은행영업시간까지 대출금의 상환자원과 채권대금의 지급자원을 제7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2. 결제일이 도래한 채권의 결제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제7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서 출금하여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채권대금은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3. 판매기업의 선입금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선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대금의 지급은 구매기업이 결제계좌에 입금한 결제대금으로 채권의 결제일에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4. 채권대금의 지급은 결제계좌에 결제대금이 있는 경우에만 처리되며, 결제대금이 당일 지급할 채권대금의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에 달할 때까지 채권 건 별 전액결제만 처리하기로 합니다.
5. 결제일에 지급가능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결제되지 않은 채권대금의 지급은 결제일 당일 이후에는 지급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구매기업의 신청에 의해 채권 건 별로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과 같이 물품 등의 공급대금의 지급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대출이 실행된 경우, 그 결제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7. 대출금의 중도상환에 따른 보증료 환급은 공사와 구매기업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1조(지급보류 등록)

1. 이 약정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이하 “압류”라 합니다) 등이 구매기업에게 송달되는 경우, 구매기업의 신청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① 판매기업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선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취소한 후 구매기업이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② 판매기업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선입금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하여 압류대상 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③ 판매기업이 채권의 일부 금액에 대하여 선입금하여 채권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 가. 선입금하지 않은 채권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지급보류를 등록하기로 합니다.
 - 나. 지급보류 등록된 채권에 대하여는 결제일 도래하여 구매기업의 결제 시,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 다.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원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2. 구매기업에게 (가)압류 등이 송달된 경우 구매기업은 지체 없이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구매기업이 통지를 지체하여 판매기업에게 채권대금이 지급되는 등 이 약정에 의한 거래가 실행된 경우,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기업이 변제 책임을 집니다.



제12조(손실부담 및 면책)

- 1. 은행은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 간에 물품 등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이 약정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위험부담·면책조항」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손실부담 및 면책」을 준용합니다.

제13조(약관의 변경)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4조(약정의 효력 및 약관 적용의 우선순위)

- 1. 이 약정의 효력은 약정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또는 약정기간)까지 유효합니다.
- 2. 제1항에 의해 약정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약정에 의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약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4.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공사의 「수출신용보증(공급망)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5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6조(기타 특약사항)

	구매 기업	(인)
본인은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구매 기업	(인)

20 년 월 일

[구매기업(채무자)]

기업명 : _____(인)

주 소 : _____

